

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

습기로운 보육활동 보호생활

4편: 업무방해 / 손괴





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: **업무방해**

개념

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

※ 법적근거 : 형법 제314조(업무방해)

● 업무방해죄 성립요건

요건	확인
보육교직원이 적법하게 보육업무를 수행	<input type="checkbox"/>
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서	<input type="checkbox"/>
업무의 방해	<input type="checkbox"/>



예시

-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실로 들어와 큰소리를 지르며 허위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
- 보호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구청, 시청 등에 반복적으로 허위민원을 제기하여 어린이집에서 이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로 과도한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여 원래 수행해야 할 보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

현장사례

"퇴소한 원아가 어린이집 외부에서 다른 원아를 때린 상황이 발생했어요. 피해 원아 보호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폭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하고,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온갖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으며 업무를 방해했어요. CCTV확인 결과, 어린이집 내부에서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원아 모두 퇴소하고 담임교사도 퇴사했어요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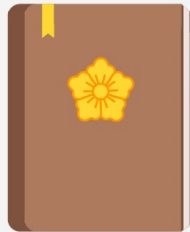
"원아가 어린이집 내에서 다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여, 수심 차례 전화 및 OO노트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방해를 하였으며, 교사들이 힘들어하여 사직서를 내려고 했어요."

"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애를 어떻게 봤길래 감기에 걸렸냐며 갑자기 어린이집에 공무원과 함께 와서 아이들을 보던 담임선생님 내려오라고 큰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소리쳐서 어쩔 수 없이 보조선생님을 교실로 급하게 보내고 선생님이 내려오게 됐어요. 그러면서 무조건 CCTV를 열라는 거예요."

* 현장사례 재구성



판례



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'위력'은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
사회적·경제적 지위나 권세 등 간접적 압박도 포함됨.
그러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면
위력에 해당하지 않음

[대법원 2013.2.28.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]



한국보육진흥원



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

참고: 업무방해죄 처벌 관련

「형법」에 따른 업무방해죄 처벌

- 「형법」 제314조(업무방해)

제313조의 방법(신용훼손)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



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: 손괴

개념

어린이집의 재물,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, 은닉,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

※ 법적근거 : 형법 제366조(재물손괴 등)

● 손괴죄 성립요건

요건	확인
보육교직원 또는 어린이집 소유의	<input type="checkbox"/>
재물,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	<input type="checkbox"/>
손괴, 은닉,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	<input type="checkbox"/>



예시

- 어린이집에서 자녀의 행동에 화가 난 부모가 교사와의 면담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과 의자를 파손하는 경우
- 어린이집 놀이기구를 부수는 등 고의로 어린이집 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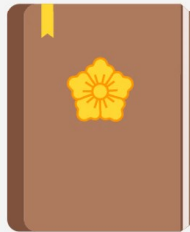
현장사례

"아동학대를 의심한 재원생 보호자가 무단으로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교사를 폭행하고 어린이집 내 집기를 파손했어요. 이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대다수가 퇴사하게 되었어요."

* 현장사례 재구성



판례



건조물 벽면에 낙서하거나 계란 등 오물 등을
투척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,
효용 침해 여부는 용도, 미관, 이용자의 불쾌감, 복구 난이도 등
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

[대법원 2007.6.28.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]

